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5. 11 선고 2022나5685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

담당변호사 권윤주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

담당변호사 김학무, 정진원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곽동석

변 론 종 결 2023. 4. 20.

판 결 선 고 2023. 5. 11.

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4. 12. 선고 2020가단247729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4. 15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

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198,451,019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, 대한민국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고,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3면 표 안 제2행의 “이 사건 건물”을 “이 사건 부동산”으로 고친다.○ 제1심판결 제4면 표 안 제1 내지 2행의 “대구 달성군 K 전 740㎡(‘대구 토지’)”를 “대구 달성군 K 전 740㎡ 중 1/4 지분(‘대구 토지’)”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4면 표 아래 제1행부터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, 갑 제6 내지 13호증, 갑 제15, 1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7호증의 각 기재,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N, 주식회사 L, P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』

○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의 “C이” 앞에 “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,”을 추가한다.

2. 추가 판단

가.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1) 피고의 본안전 항변

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4. 15.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 2016. 5. 18.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, 2017. 11. 10. 대한민국(처분청 김포세무서)의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므로, 원고는 그 무렵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.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. 6. 30.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,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.

2) 판단

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(민법 제406조 제2항). 여기서 ‘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’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.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.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,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(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).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6. 5. 18.경 또는 2017. 11. 10.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나. 피고의 채권자취소권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

1) 피고의 주장

대구 토지의 제1심 변론종결일 당시 시세와 대구 토지에 관한 O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

소멸한 점 등을 고려하면,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는 C의 자력이 회복되어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였다.

2) 판단

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,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의 자력이 회복되어 더 이상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1호증의 기재,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의 적극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, 김포 축사, 김포 아파트에 관한 각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, C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2023. 1. 10. 대구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, 2023. 4. 5. 기준으로 C의 양도소득세 체납금액이 24,773,8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강병훈, 판사 이소연, 판사 이도훈

목 록

1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 93.6㎡ 중 4분의 1 지분
2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[도로명주소]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알씨조 및 벽돌조
평층레브4층
근린생활시설 및
단독주택(1가구)
1층 55.80㎡(소매점)
2층 55.80㎡(사무소)
3층 55.80㎡ 주택(1가구)
4층 55.80㎡ 주택(1가구)
구조내역 : 알씨조 : 1.2층
벽돌조 : 3.4층
중 4분의 1 지분 끝.

